

12. 특별위원회 보고

1) 신은급법대책위원회

1. 조직

위원장 : 유강신 목사

서 기 : 송창섭 목사

위 원 : 조사연구분과위원 : 김교석 목사 김길진 목사
박정인 목사 송헌영 목사
운영분과위원 : 김희철 목사 김범용 목사
백용현 목사 표창근 목사
유재승 장로

2. 회의

1) 제1차 회의(2013. 2. 15)

: 조직 구성

2) 제2차 회의(2013. 4. 1)

: 우림회계법인을 컨설팅 의뢰 기관으로 선정

3) 제3차 회의(2013. 4. 26)

: 설문조사보고, 공청회 일정 확정

4) 제4차 회의(2013. 6. 4)

: 공청회 결과 보고

5) 제5차 회의(2013. 6. 11)

: 공청회 결과 및 신은급법 개정안 논의

- 6) 제6차 회의(2014. 6. 19)
: 신은급법 개정안 논의
- 7) 제7차 회의(2014. 10. 6)
: 신은급법대책위원회 활동 종료 및 보고서 작성

3. 활동 내용

- 1) 우림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
- 2) 전국 단위 은급법 개정을 위한 설문지 조사
- 3) 은급법 개정 3개안으로 연회별 공청회 실시
- 4) 은급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입법회의(2013년 11월 13~15일)에 상정하였으나, 보완하여 차기 입법회의에서 다루기로 함.
- 5) 은급재단이사회 신은급법개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은급법 개정 최종안을 만들어 은급재단이사회 정기이사회(14.10.17)에서 가결 하고, 차기 은급재단이사회에 넘겨주어 2015년 입법회의에 상정 하기로 함.
- 6) 최종개정안 주요내용
 - ① 현행 감리연금제도는 폐지한다.
 - ② 감리회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는 은급제도로 일원화한다.
 - ③ 은급금지금액은 연지급계산액을 현행수준(25,000원)으로 하되 1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한다.
 - ④ 교회은급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.(현행 1.5%에서 〇%로 [컨설팅 완료 후 확정])
 - ⑤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.(현행 3년에 1회를 〇년에 1회 로 [컨설팅완료 후 확정])
 - ⑥ 교회은급부담금 최저액을 60만 원으로 한다.(단 경상비결산액 1 천만 원 미만 교회는 개척 후 3년까지는 면제해 준다.)

- ⑦ 교역자은급부담금 최저액을 60만 원으로 한다.(단 경상비결산액 1천만 원 미만 교회는 개척 후 3년까지는 면제해 준다.)
 - ⑧ 본부 부담금(1%)에서 0.5%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.(단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)
 - ⑨ 교목, 군목, 원목, 신학대학교수 등 연금수혜자는 기관에 근무한 기간의 은급금지급액을 50% 삭감한다.
 - ⑩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은 교회는 다음해 지방회, 연회,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.
 - ⑪ 은급재단이사회를 독립시키고 은급재단이사회 안에 은급재단 사무국을 둔다.
 - ⑫ 은급재단이사회 이사는 21명으로 하고, 연회선출 이사 11명, 은급재단이사회 선출이사 10명(전문직 이사 5명 포함)으로 한다.
 - ⑬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⑭ 은급기금은 반드시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, 수익사업은 기금의 30% 내에서 하되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운영한다.
- 7) 감리회 기본재산 중 일부, 감리회 망실재산, 애향숙재산을 은급재단 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.

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2014. 10. 17

위원장 **유강신** 목사
서 기 **송창섭** 목사